

# 대학평의위원회 운영 규정

2008년 02월 11일 제정 2012년 03월 20일 개정 2016년 07월 15일 개정 2024년 08월 13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복음신학원 정관 제83조에 의하여 설치되는 건신 대학원대학교 평의위원회(이하 “평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3.20.>

**제2조(기능)** 평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는 자문에 한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대학의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의 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의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및 자격)** ① 평의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별 평의원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5명
2. 직원 3명
3. 학생 1명
4.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2명

② 각 구성단위별 평의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평의원은 본 대학 전임교원으로서 4년 이상 재직자
2. 직원 평의원은 본 대학(본 학원 포함) 정규직원으로서 4년 이상 재직자
3. 학생 평의원은 2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
4.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외부 평의원은 덕망이 있고, 대학의 주요 정책에 대한 충분한 식견과 경륜을 갖춘 자

③ 교\원 및 직원 평의원이 임기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신분변동이 있을 경우 그 신분이 변동된 날로부터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휴직 및 퇴직
2. 징계에 의한 직위해제

3. 3개월 이상의 산업체 연수학기 또는 해외 연수

④ 학생 평의원이 임기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신분변동이 있을 경우 그 신분이 변동된 날로부터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휴학
2. 자퇴 또는 졸업
3.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

⑤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로서의 평의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자격을 상실한다.

**제4조(추천 및 위촉)** 평의원은 각 구성단위별로 다음과 같이 총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각 구성단위별로 2배수를 추천한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되 자격이 되는 자가 2배수가 안되면 최대한의 인원을 추천한다.

1. 교원 평의원 : 교수회의에서 추천한 자
2. 직원 평의원 : 직원회의에서 추천한 자
3. 학생 평의원 : 총학생회에서 추천한 자
4.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외부 평의원은 동문 및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제5조(임원 및 직무)** ① 평의원회에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 평의원회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 유고시 의장을 대리한다.

③ 평의원회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한다.

**제6조(임기)**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 평의원의 임기는 1년,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총장은 평의원 임기만료 30일전까지 각 구성단위에게 서면으로 추천을 의뢰하여야 하며, 각 구성단위는 추천을 의뢰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평의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소집 및 운영)** ① 평의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상반기 및 하반기에 각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1.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2.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재적 평의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제8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평의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의록)** 평의원회 회의록은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을 하여야 하며, 회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출석 및 자료요청)** ① 평의원회 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교직원에게 평의원회에 출석 또는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교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평의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총장이 임명한다.

**제12조(비밀유지)** 평의원회 의원 및 관계 교직원이 평의원회 회의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사항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예산)** 총장은 평의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개방이사 추천위원회)** ① 법인 정관 제20조의3 제1항에서 정한 개방이사 및 감사를 추천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에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삭 제> <개정 2024.08.13.>  
③ 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4.08.13.>

**제15조** <삭 제> <개정 2024.08.13.>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평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세칙을 정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및 동법 시행령, 법인 정관을 준용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